

2002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12.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9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인 5,46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5백만원, 특별회계가 2,53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백만원, 지방양여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52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53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00백만원, 사업예산 3,8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1,06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53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